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 기준에 따른 제재처분 상한 명시〉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05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8. 29.
- (3) 회 부 일 : 2025. 9.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2조).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¹⁾이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²⁾에 대해 ‘사업의 정지’ 처분을 할 때 그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u>사업의 정지</u> ,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 ----- ----- <u>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	② ----- ----- ----- -----

1)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u>사업의 정지</u>,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 6개월 <u>이내의 사업 정지</u>----- ----- -----. ③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계 부정 및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해당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정지 기간 상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장애인복지시설시행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시행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 사업의 정지 처분을 할 때 그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2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행정기본법」은 종전까지 행정법 분야에서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없어 공무원과 국민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 법률마다 유사 제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2021년 3월 제정되었으며,
- 동법 제5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만, 사업의 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에 대해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아동복지법」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3항³⁾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서 정하고 있으나(참고자료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동 시행규칙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사업의 정지’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정지’보다는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처분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정안과 별도로 시행규칙에도 ‘사업의 정지’ 관련 기준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현황>

(단위:건수)

구분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장애인 거주시설	37	5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5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3	-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

자료: 보건복지부

3)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사업 정지 기간을 6개월 범위로 한정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502호)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⁴⁾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처분 시 상한을 명시하여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 고려 시, 6개월 이내 기간은 적당한 것으로 보임.

* 「아동복지법」 제56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시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번 개정안이 행정적 예측 가능성과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동의함. 그러나 단순히 “6개월 이내”라는 상한만을 규정할 경우,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른 차등 적용 장치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재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침해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제재 실효성과 당사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차등적 정지 기간 운영, △사업 정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및 전원 계획 수립에 관한 보완 규정 마련, △정지 처분 전 개선명령 및 청문 절차의 강화 등과 같은 대안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사업 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은 사업 정지 기간 동안 돌봄, 거주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됨. 시설장과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합당하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법체계의 적합성을 강화하는 데 타당하여 찬성함.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찬성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4. 8. 14.>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 (제44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바목·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장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법 제 59조제6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법 제62조제1항	<u>개선명령</u>	<u>시설장교체</u>	<u>시설폐쇄</u>
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		<u>개선명령</u>	<u>시설장교체</u>	<u>시설장교체</u>

을 거부·방해하거나 기 피한 때			
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u>시설폐쇄</u>	<u>—</u>	<u>—</u>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 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이 발견된 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 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 로 사용한 때	<u>개선명령</u>	<u>시설장교체</u>	<u>시설장교체</u>
2)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u>개선명령</u>	<u>시설장교체</u>	<u>시설장교체</u>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 당한 차별,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u>개선명령</u>	<u>시설장교체</u>	<u>시설폐쇄</u>
4) 그 밖의 회계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 위가 발생된 때	<u>개선명령</u>	<u>개선명령</u>	<u>시설장교체</u>
마.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 목적에 이루었거나 그 밖 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는 때	<u>시설폐쇄</u>	<u>—</u>	<u>—</u>
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1)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 [「형법」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범죄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u>시설폐쇄</u>	二	二
2) 시설의 장이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u>시설장교체</u>	<u>시설폐쇄</u>	二
3) 시설의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300조,	<u>개선명령</u>	<u>시설장교체</u>	<u>시설폐쇄</u>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 14조, 제14조의2 및 제 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시설이용자 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또는 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아. 장애인복지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자. 장애인 거주시설이 법 제 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법 제62조제2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